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40

발의연월일: 2021. 7. 26.

발 의 자: 박주민·김남국·김승원

김정호 · 김종민 · 민형배

이용우 · 임호선 · 정필모

홍정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'중대범죄'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'나열식'으로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법률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라면 환수할 수 없고,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실효적으로 대처할수 없는 한계가 있음.

이미 프랑스, 호주, 캐나다,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일정한 법정형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하는 '기준식'을 도입하고 있음.

한편, FATF(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: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)는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의 경우, "장기 1년 이상 또는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"를 자금세탁방지 대상 수익의 원인범죄

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.

이에 따라, 별표에 나열된 범죄들을 모두 삭제하고 '장기 1년 이상 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'로 '기준식'을 신설하고자 함(안 제2조, 별표 삭제).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전단 중 "별표에 규정된 죄(이하 "중대범죄"라 한다)와 제 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"을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" 로 하고,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사형·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(이하 "중대범죄"라 한다)
- 나.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
- 다.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「형법」 제 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(想像的 競合)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
- 라.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(行爲地)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죄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특정범죄"란 재산상의 부정 1. -----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<u>별표에 규정된</u> ------<u>다음</u>각 목 죄(이하 "중대범죄"라 한다)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----. <후단 삭제> 말한다.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 른 죄가 「형법」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(想像的 競 合)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, 외국 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 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에 해당하고 행위지(行爲地) 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 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. <신 설> 가. 사형·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(이하 "중대

	범죄"라 한다)
<u><신 설></u>	나.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
<u><신 설></u>	다.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
	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
	「형법」 제40조에 따른
	<u> 상상적 경합(想像的 競合)</u>
	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
	다른 죄
<u><신 설></u>	라.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
	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
	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
	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
	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
	하고 행위지(行爲地)의 법
	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
	경우 그 죄
2. ~ 5. (생 략)	 2. ~ 5. (현행과 같음)